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의 안 번 호	844
------------	-----

제출년월일 : '99. 11.
제 출 자 : 안산 시장

개정구분 : 부분개정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1999.2.8 법률 제5865호)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중 새로이 도입되는 청결유지명령제와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의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 관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청결의무가 있는 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때에는 청결조치를 명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함에 따라 청결유지대상등을 정함(안 제3조의2).
- 나.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시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를 30%이상 섞어 제작토록하여 매립지가 초기 안정화 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제3항, 제4항).
- 다. 행락철이나 다수의 주민이 모이는 장소에서 폐기물투기 행위가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즉시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단속효과를 높이도록 하였음(안 제19조).
- 라. 과태료 처분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수시변경의 필요와 자치법규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각 삭제함(안 제19조, 제21조, 제23조).
- 마.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 기한을 납기 종료일로부터 15일에서 45일로 조정하여 현행 업무처리실태를 반영함(안 제19조제2항).
- 바. 폐기물의 무단투기와 불법처리에 대해 주민의 신고를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신고자 포상금제를 지금까지 내부지침으로 운영해 왔으나, 이를 조례로 규정해 제도화하고, 포상금을 과태료 처분액의 최고 80%까지 또는 고발했을 경우에는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23조의2).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청결유지 명령 : 폐기물관리법 제6조 제2항(국민의 청결유지책임), 같은 법 제7조 제3항(청결유지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명령과 이에 따른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신고포상금 '99 예산액 : 5백만원

- " 2000년 예산 요구액 :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고, 내년도 포상금 지급실태를 분석하여 추경예 확보

- 연도별 포상금 지급 실적 및 예산액

(단위:천 원)

년도 구분	'95년		'96년		'97년		'98년		99.9.30현 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지 급	41	2,620	100	7,850	54	4,300	48	2,450	11	475
예 산	6,000		7,850		10,000		5,000		5,000	

- 1999년 규격봉투 제작비 : 420백만원

- 2000년 생봉과성 규격봉투 제작비 : 960백만원 소요 예상

기타참고사항

- 현행조례 ('99. 5. 10 조례 제846호)
-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 (환경부 '99. 8. 9 예규 제189호)
-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금제 실시방안 (1999.8.5 폐관 67510 -19 31)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99. 6)

입법 예고 사항

- 기 간 : '99. 11. 16 ~ '99. 11. 25
- 결 과 : 수정 의견 검토결과 반영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개정조례(안)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청결유지 명령) ①시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미관을 해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청소

2. 적치된 폐기물의 수거·처리

②전항에 의한 명령의 경우에는 의무자가 행하여야 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명시하여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규격봉투(소량건설 폐기물용 포대는 제외한다)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분해성봉투 단체표준규격(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표준 1999.5.17)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 및 물성등 생분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확인·검수하여야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중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현장에서 적발된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중 “15일”을 “45일”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과태료 납부 독촉장”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중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서”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로 한다.

제23조 중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를 “사항 등을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포상금 지급) ① 폐기물의 불법투기를 신고하여 피신고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과태료 처분 금액의 80%이내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별도 기구없이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2. 비닐봉지, 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3. 휴식,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차량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6.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감량배출 및 분리 보관하도록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
- ②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고발되었을 경우 신고자에게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사용중이거나 제작된 봉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설></p> <p>④(생략)</p> <p>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p>	<p>④ 시장은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 및 물성등 생봉괴성 봉투 단체 표준규격 준수여부를 확인·검수하여야 한다.</p>
<p>제19조 (과태료의 처분통지등)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p> <p><단서신설></p> <p>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 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⑤(현행 제4항과 같음)</p> <p>◀삭제></p> <p>제19조 (과태료의 처분통지등) ① -----</p> <p>-----</p> <p>-----</p> <p>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p> <p>-----</p> <p>-----</p> <p>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현장에서 적발된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p> <p>②-----</p> <p>-----</p> <p>-----</p> <p>-----</p> <p>45일-----</p> <p>-----</p> <p>-----</p> <p>-----</p> <p>③-----</p> <p>-----</p> <p>-----</p> <p>-----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6.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감량배출 및 분리 보관하도록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p> <p>②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고발되었을 경우 신고자에게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p>
<u>별지 제1호서식(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u>	<u><삭제></u>
<u>별지 제2호서식(과태료납부독촉장)</u>	<u><삭제></u>
<u>별지 제3호서식(과태료부과취소통지서)</u>	<u><삭제></u>
<u>별지 제4호서식(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u>	<u><삭제></u>
<u>별지 제5호서식(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u>	<u><삭제></u>
<u>별지 제6호서식(과태료수납부)</u>	<u><삭제></u>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844
------------	-----

발의년월일 : 1999. 12. 23

제 안 자 : 경제·사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안 제19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제1항중 “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을 “법 제7조 제1항 규정”으로 수정함.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9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제1항중 “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을 “법 제7조 제1항 규정”으로 한다.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19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현장에서 적발된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제19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u>법 제7조 제1항 규정</u></p> <p>②~③ (원안과 같음)</p>